

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4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평생교육 정책의 주요 대상인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, 평생교육협의회를 비상설화하며,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, 우리시 평생교육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5호)
- 나.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비 규칙 위임 조항을 삭제함(안 제7조)
- 다. 평생교육협의회 비상설 운영 규정을 신설함(안 제9조제4항)
- 라.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함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평생교육법」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- 다. 협의사항
 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 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 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 동의
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
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3. 6. 8. ~ 6. 28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강성준(☎2133-3966)

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평생교육진흥원을”을 “기관을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교육 소외계층”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·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, 저학력 성인, 결혼 이민자, 외국인 근로자,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평생교육 진흥책무)”를 “(평생교육진흥 책무)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6호 중 “취약계층”을 “교육 소외계층의”로 한다.

제4조의3제2항 중 “해당연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, “다음연도”를 “다음 연도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범위 안”을 각각 “범위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은평학습장, 시민청 등 시에서 운영하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”를 “학점은행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인정될”을 “인정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.

4.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

제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가 끝난 후 자동해산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”를 “해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
2.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4.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5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“임시회에 한정하여 서면”을 “서면”으로 한다.

②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,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5조 본문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”을 “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7호 중 “취약계층”을 “교육 소외계층”으로 한다.

제24조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28조 전단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위탁하는”을 “위탁하고자 할”로 한다.

제32조제2항 중 “인정될”을 “인정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“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”이란 시장이 서울특별시 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<u>평생교육진흥원</u>을 말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관</u>을 ----- 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“<u>교육 소외계층</u>”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·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, 저학력 성인, 결혼 이민자, 외국인 근로자,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.</p>
<p>제3조(<u>평생교육 진흥책무</u>) ① · ② (생략)</p>	<p>제3조(<u>평생교육진흥 책무</u>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</p>	<p>제4조(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· 시행한다.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취약계층</u>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</p> <p>7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4조의3(시행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<u>해당연도</u>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<u>다음연도</u> 5월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) ① 시장은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,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,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<u>범위</u>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, 자치구,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 진흥</p>	<p>-----.</p> <p>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교육 소외계층의</u> ----- --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의3(시행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해당 연도</u> ----- ----- <u>다음 연도</u> ----- -----.</p> <p>제5조(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7조(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등) ① 시장은 <u>은평학습장, 시민청 등 시에서 운영하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 과정,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학습비(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말한다) 등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학습비 징수·면제·환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제8조(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</p>	<p>----- 범위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등) ① ----- <u>학점은행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----- 인정할 ----- ----- -----.</p> <p><삭제></p> <p>제8조(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) ①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시 평생교육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취약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<u>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9조(협의회의 구성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10조(임기) ①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</u>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 <u>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u></p> <p>제11조(해촉)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</u>할 수 있다.</p> <p>1. <u>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</u></p>	<p>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5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협의회의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가 끝난 후 자동 해산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제11조(해촉) ----- ----- ----- <u>해촉</u> ----- -----.</p> <p>1. <u>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은 경우</u></p> <p><u>2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</p> <p><u>3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13조(회의) ① <u>협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</u></p> <p><u>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</u></p>	<p><u>경우</u></p> <p><u>2.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</u></p> <p><u>3. 협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</u></p> <p><u>4. 협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</u></p> <p><u>5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 <p>제13조(회의) <u><삭 제></u></p> <p><u>②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,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③·④ (생략)</p> <p>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<u>임시회에 한정하여 서면</u>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</p>	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<u>서면</u> ----- ----- . ----- ----- . -----</p>
<p>제15조(수당 등)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<u>범위</u>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15조(수당 등)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 ----- . ----- ----- . -----</p>
<p>제17조(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)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</u>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</p>	<p>제17조(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) ①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</u> ----- ----- ----- . -----</p>
<p>② (생략)</p> <p>제18조(사업) 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<u>취약계층</u>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</p> <p>8. ~ 13.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사업) ----- ----- ----- . -----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교육 소외계층</u> ----- -----</p> <p>8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4조(출연금)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</p>	<p>제24조(출연금)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----- -----.</p>
<p>제28조(수익사업)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전에 수익사업의 대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8조(수익사업) ----- ---- <u>범위</u>----- -----. -----.</p>
<p>제29조(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) 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<u>위탁하는</u>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 ②·③ (생략)</p>	<p>제29조(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) ① ----- ----- <u>위탁하고자 할</u> 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2조(공무원의 파견) ① (생략) ②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<u>인정될</u>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 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32조(공무원의 파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인정할</u> ---- ----- ----- -.</p>

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안은 평생교육 정책의 대상 규정과 평생교육협의회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임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 강성준 (02-2133-3966)